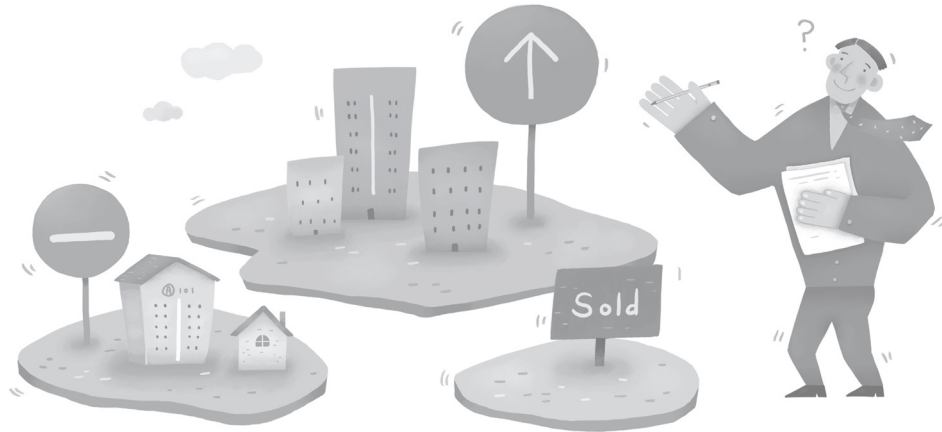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말소 기준 등이 강화됐고, 과징금이 상향조정됐으며 과태료 대상도 추가됐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편집자주]

1) 신고 및 통보제도 위반 시 제재사항

(2012. 5. 31 기준)

위반 내용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처벌 내용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법 제9조제4항 영 제12조의2	· 미신고 시 : 시정명령 ⇒ 불이행시 ⇒ 등록말소 · 허위신고 시 :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 신고	법 제 9조의2 영 제12조의3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내용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처벌 내용
<p>〈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 모두 해당)를 원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그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통보한 사항에 변경 발생 또는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시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p>법 제22조제4항 영 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통보시: 시정명령 ⇒ 불이행시 ⇒ 100만원의 과태료 • 허위통보시: 100만원의 과태료
<p>〈직접시공계획의 통보〉</p> <p>도급금액이 50억 미만인 공사를 원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시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시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시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시 10%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p>	<p>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p>	<p>100만원의 과태료</p>
<p>〈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통보〉</p> <p>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변경·해제포함)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에 의해 통보</p>	<p>법 제29조제4항 영 제32조 제82조제1항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통보시: 100만원의 과태료 • 허위통보시: 영업정지 3월 또는 4천만원 과징금
<p>〈건설업 양도 신고〉</p> <p>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p>	<p>법 제17조제1항 규칙 제18조</p>	<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
<p>〈건설업 폐업 신고〉</p> <p>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단,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지위(공사실적, 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등)가 승계 됨</p>	<p>법 제20조의2 제83조제12호 제85조의2</p>	<p>폐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록말소</p>
<p>〈하도급계획의 제출〉</p> <p>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또는 민간공사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p>	<p>법 제31조의2 영 제34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불이행시: 300만원 과태료
<p>〈기술자 현장배치 및 확인〉</p> <p>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 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p>	<p>법 제40조 영 제35조제5항 규칙 제3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배치시: 시정명령 ⇒ 불이행시 ⇒ 영업정지 2월 또는 2천만원 과징금 • 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과태료 30만원
<p>〈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통지〉</p> <p>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수급인인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p>	<p>법 제14조제2항</p>	<p>발주자 또는 수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 부담</p>

2)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위반 관련 처벌사항

위반 내용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처벌 내용
<일괄하도급>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	제29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96조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하도급>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하는 행위	제25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96조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일업종 간 하도급>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제29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96조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재하도급>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행위	제29조제3항 제82조제2항 제96조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1항 제81조제1호 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지시 • 시정명령·지시 불이행시 : 6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사회보험료 소요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자	제22조제5항 제81조 제8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지시 • 시정명령·지시 불이행시 : 6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제23조제3항 제82조제1항 제97조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이하 영업정지 • 1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제28조의2 제82조제2항 제1호의2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을 허위신고	제23조의2제2항 제97조제1호의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찰질서 문란행위	제9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해태 (불법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	제29조의2 제99조제6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1항 제81조제5호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내용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처벌 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2항 제81조제5호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선급금 지급규정 위반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34조제3항 제81조제5호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제36조 제81조제5호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검사 및 인수 거부 - 준공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준공 후 인수를 기피하는 자	제37조 제81조제5호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는 자 -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요구	제38조 제81조제5호 및 제5호의2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수급인 제외)	제22조제2항 제99조제2호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제38조의2 제83조제12호 제9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하 영업정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 6월 - 4월 - 2월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 불이행	제28조제1항 제81조 제82조제1항	시정명령·지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제82조제1항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 업무상 과실로 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제93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4조제1항 제9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하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 건설업 등록 위반 관련 처벌사항

위반 내용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처벌 내용
건설업의 부정·허위 등록	제9조 제83조제1호	건설업 등록 말소
무등록 시공자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한 자	제9조 제96조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주기적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4항 제81조제2호 제83조제7호	시정명령 ⇒ 건설업등록 말소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주기적신고)를 허위로 한 때	제9조제4항 제83조제2호	건설업등록 말소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0조 제83조제3호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월이내 임원을 개입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제1항 제83조제3호	건설업등록 말소
건설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자	제83조제8호	1년이내 영업정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위반자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시공 하는 등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수주 시공하는 자	제16조 제82조제2항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증 대여자	제21조 제83조제5호 제96조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 말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거나, 빌려주어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사실이 있는 때	제21조의2 제83조제6호	건설업 등록 말소

4) 기술자 현장배치 및 시공관리 위반 관련 처벌사항

위반 내용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처벌 내용
건설공사의 시공자 제한 위반자	제41조 제96조제6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1항 제81조 제82조 제9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제11조 제97조제3호	1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제40조제2항 제100조제2호	5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제49조제1항 제99조제8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작하게 한 때	제82조제2항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제83조제9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함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